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최웅식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 1417 호

다. 발의일자 : 2020. 4. 3.

라. 회부일자 : 2020. 4. 8.

2.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20.1.1.)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안 제4조 및 별표)

- 도로, 철도, 수도공급시설, 열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하수도
- 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7조)
- 라.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최소 유지관리기준)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토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 마.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예산투입 등 유지관리 관련 정보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사.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기술 발굴·적용 및 문제 해결과 혁신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관·민의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아.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을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 자.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안 제 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 요

- 본 제정안은 ‘20.1.1일부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이하 ‘노후기반시설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기반시설관리법」 체계에 맞춘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는 도시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18.12.31)되기 그 이전인 ‘16.7.14일에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현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마중물 역할을 자임해 왔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와 부합하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겠음.
- 참고로,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 대비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① [변경] 상위법에 따라 적용 대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 조정
 - ② [변경] ‘종합관리계획’ → ‘기반시설 관리계획’
 - ③ [신설]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 추가

- ④ [변경]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 '기반시설 실태조사'
- ⑤ [신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가
- ⑥ [신설] '기반시설 기술혁신 협의체 구성·운영' 추가
- ⑦ [변경] '성능개선위원회'+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로 일원화
- ⑧ [신설] 재원마련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추가

■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 이행 현황**

- 서울시는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18.10월부터 17종 시설물에 대해 실태평가에 착수하여 '20.3월말 기준 공정률 94%로 금년 6월 완료예정에 있으며,
- 기존 17종 시설에 대한 실태평가에 '19년에 추가로 열수송관을 포함하여 현재 총 18종 시설에 대한 실태평가를 진행 중에 있음([표] 참조).

[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관리대상 현황

연번	시설물 종류 및 규모			관리부서(기관)	비고
1	도로 및 철도	교량	415개소	안전총괄실(도로시설과)	
2		터널	475개소	도시교통실(서울교통공사)	
3	시설물	공동구	7개소	안전총괄실(도로시설과)	
4		옹벽	1,083개소	안전총괄실(도로관리과)	
5		절토사면	437개소		
6	상수도	상수관로	13,587km	상수도사업본부(시설안전부)	
7		가압장	211개소		
8		배수지	100개소		
9		정수장	9개소		상수도사업본부(생산부)
10	취수장	4개소			
11	하수도	하수관로	10,682km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12		하수처리장	4개소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13	하천	수중보	2개소	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	
14		수문	312개소		
15		제방	473km		
16		배수펌프장	120개소		
17	건축물	체육시설 세종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지하도상가 병원 지하철역사	360개소	관광체육국(체육정책과 10) 문화본부(세종문화회관 1)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26)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 25)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20)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278)	
18	열수송관		416km	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	추가

- 이들 총 18종에 대한 실태평가보고서가 작성되면 현행 「노후 기반시설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남은 절차이나,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안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와 안 제7조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됨.
- 또한, 시는 실태평가 결과를 DB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이 95%로, 이 역시 안 제13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음.
- 이처럼 서울시는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반시설관리법」의 시행 토대를 이미 마련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태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일부 보완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기반시설관리법」 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전산개발비 등(정보화 사업 900백만원), 시설비(300백만원)
- 성과지표(정보화 사업)

성과지표명	설명	측정산식	목표치
분석정보 기반 중장기 추자 및 실행 계획 반영 비율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지원	유지관리 계획의 시스템 분석 내용 반영 비율 조사	100%

■ **조례안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1)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2조 및 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 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기업의 장

제4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안 제2조는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1호의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1)에 따

른 시설로써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 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한 가지 특이점은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가 ‘성능개선’과 ‘장수명화’를 별개의 용어를 규정한 반면 본 조례안에서는 이들 둘을 ‘성능개선’으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있음.
- 다음으로, 안 제4조의 경우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시설관리법」 제4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른 시 소관 기반시설로 명시하고 있음.
- 즉, 교통시설(도로, 철도 등), 유통·공급시설(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방재시설(하천 및 저수지), 환경기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 20. (생략)

2)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조(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공급시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초시설(하수도)에 해당하며,

-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가 완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기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용연수와 상관없이 본 조례안 [별표]에서 정한 모든 기반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행 대비 크게 확대되었음.

2) 시장 등의 책무(안 제5조)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는 「기반시설관리법」 제5조⁴⁾에 따라 시장에게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예산 확보, 중기재정계획 반영 책무를, 관리주체에게는 시책 협력,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소요재원 확보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여기서, 관리주체의 소요재원 확보 책무와 별개로 「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⁵⁾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시설의 건설

4)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기반시설에 한해서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 개선비용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재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노후화되는 시설물들을 적기에 성능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당시 국고보조하지 않았던 시설물까지 국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음.

3) 기반시설 관리계획(안 제7조)

제7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 5)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자체 성능개선 재원 확보 노력, 성능개선기준의 충족도,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지원비율과 제5항에 따라 정한 성능개선비용 지원 한도를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및 재원의 조달·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보고서·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안 제7조제1항은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자원 조달·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성능평가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될 경우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장수명화가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유지관리 및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안 제8조 및 제9조)

제8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을 제9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 제8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을 최소유지관리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최소유지 관리기준은 안 제9조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음.
- 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11조가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는 새로운 관리개념을 도입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해 안전 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지면 관리주체가 점검 및 진단 결과와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지관리 수준을 정하여 관리해 온 측면이 있는 반면,
-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미리 설정·고시하고 관리주체는 그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시장이 정할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재 마련 중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이 설정·고시되면 그 공통기준 내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5) 성능평가(안 제10조)

제10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성능평가의 방법은 「시설물안전법」 제40조⁶⁾에서 정하고 있으며, 성능평가에 포함될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와 시설물의 종합성능 및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제안 등에 해당함.

6) 성능개선기준의 설정(안 제11조)

-
- 6)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성능개선기준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 제11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토록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역시, 「기반시설관리법」 제13조7)가 '성능개선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에 따른 것으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주려는 것임.
- '성능개선기준'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통기준이 설정·고시되면 그 공통기준 내에서 시장이 자체적인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하게 되고, 관리주체는 그 기준에 따라 성

- 7)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 ③ 성능개선기준은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능개선을 이행해 나가게 될 것임.

- 다만, 「기반시설관리법」상 유지관리는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성능개선은 판단기준만 제시할 뿐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7) 기반시설 실태조사(안 제12조)

제12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안 제12조제1항은 시장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영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14조⁸⁾에 따른 조치로 안 제7조의

8)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년 단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핵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안 제13조의 ‘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 DB화한다면 기반시설물별 관리이력 차트(chart)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짐.

8)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3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을 위해 산·학·관·민 등의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13조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안 제12조의 실태조사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키 위한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해당 시스템의 구축 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⁹⁾에 따른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통일성도 감안해야 할 것임.

9) **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을 위해 산·학·관·민 등의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17조)

제1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2. 제9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
4.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도시교통실장,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총괄실 담당과장이 된다.

⑦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
 2.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자문, 안 제9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변경 심의, 안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의 설정·변경 심의, 안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의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성능개선위원회’와 종합관리계획의 최종 조정·결정 등의 의결을 담당하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통합하는 위원회로,
- 그 기능이 다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나 안 제17조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위원회 기능 수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10) 성능개선총당금 적립(안 제18조)

제18조 (성능개선총당금 적립) ① 시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능개선총당금”(이하 “성능개선총당

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총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성능개선총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 2. 그 밖에 시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 안 제1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총당금을 적립토록 하면서, 관리주체별 성능개선총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제3항에서 관리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국가로부터의 성능개선비용 지원은 물론 서울시에 산재된 노후 기반시설물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므로 강력한 의지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충분한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종합의견

- 국가가 그동안 기반시설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관리해 오던 제도적 상황에서, '20.1.1일자로 「기반시설관리법」을 새로이 제정·시행함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

개선기준이 도입되고 실태조사를 통한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 관리 체계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 이에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가 노후기반시설물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했던 「노후기반시설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반시설관리법」 체계에 맞추어 후속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의 기반시설물이 대부분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5년 단위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성능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되며,
-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은 물론 안전성과 사용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여겨짐.